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 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정이유

- 소각장건립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스포츠클럽센터)과 금년말에 준공될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영에 이바지함 (안 제1조, 제2조)
-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사항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마.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 · 망실 · 구조변경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함 (안 제9조)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조례는 파주시가 친환경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 시설 사업중 가장 큰 규모로 추진중인 환경관리센터내에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주민편의시설(스포츠센터)과 인접 지역에 보강공사중인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 운영지원 및 손해배상, 시행규칙 등 모두 본칙 10개조와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
-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사용과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아울러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나. 내용타당성

- 동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내·외에 설치된 것으로, 각종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등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 그 시설로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 당구장, 스쿼시장 등 스포츠시설을 비롯하여 숙소와 식당, 매점등이 있으며 부지외곽 인근에 인조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갖춘 제2공설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시설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도록 별표 각호에 정하였고, 제5조(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경기, 낙하리와 내포리등 주변영향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전액 무료라고,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기타체육진흥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감면하도록 정하였으며,

- 제7조(운영·관리) 제1항에서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8조(운영지원)에는 수탁자가 적자가 발생할 경우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항에 의해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리운영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이중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각종 시설별 사용료를 얼마나 적정하게 책정하였는가 하는 것과 위탁관리 운영중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얼마만큼 허용해야할 것인가가 비교적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위 두가지는 지속적인 시설운영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시설별 사용료의 책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